

영국사례

**신문사와 주고받은 메일 내용은
사적 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공공의 관심사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영국 PCC는 브롬리에 거주하는 존 포스터가 『배신의 최후결과』라는 제목으로 캠브리지 이브닝 뉴스사가 지난 2006년 5월 6일자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만신청인은 문제의 기사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슬픔에 잠겨있는 이에게 더 큰 충격을 주는 등 PCC 윤리강령 제1조(정확성)와 제5조(슬픔과 충격에 부정적인 개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만신청인은 문제의 기사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편집장에게 보낸 통신문들을 근거로 보도됐다고 윤리강령 제3조(사생활 침해)와 제14조(비공개 자료 사용)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적 기사는 불만신청인의 아내가 불만신청인의 정부(情婦)를 칼로 찌른 사건에 대해 불만신청인과 캠브리지 이브닝 뉴스사의 편집장 사이에 오고 간 e-메일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 e-메일 안에는 불만신청인이 자신의 정부

(情婦)에 대한 내용을 어디까지 보도할 것인가 등에 관해 의논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문제의 기사는 이 e-메일들에 대해 “아내에 대한 불만신청인의 더욱 깊은 배신행위를 암시한다”고 보도했다.

불만신청인은 자신이 편집장과 연락하는 것은 비밀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처음 연락을 주고받던 시기의 전화통화 및 통신문의 여러 부분에서 확실하게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만신청인은 기사 내에 자신의 의견이 빠졌기 때문에 독자들이 오도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자신의 행동은 아내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었고 편집장과 주고받은 e-메일 또한 PCC로 전달한 확인 서류에 나타난 대로 아내와 가족 그리고 자신의 정부(情婦) 등이 모두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만신청인은 ‘사건 이후 며칠간 아내와 자신의 전(前) 애인의 사진 여러 장’을 그들 몰래 ‘은밀

하게’ 캠브리지 이브닝 뉴스사로 보냈다는 이야기도 옳지 않고 두 여인 모두 불만신청인이 먼저 아내의 사진을 보내고 몇 주 후에 전 애인의 사진을 보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불만신청인은 자신이 계속해서 “두 여자 모두를 만나고 있었다”라는 것과 병원에 있는 정부(情婦)의 상태를 알아내기 위해 캠브리지 이브닝 뉴스사에 연락을 취했다는 보도 내용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캠브리지 이브닝 뉴스사와 연락이 되기 시작하면서 불만신청인은 언론의 요청에 따라 다른 정보들을 제공했지만 취재범위를 조 작하려 하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캠브리지 이브닝 뉴스사의 편집장은 통신문을 비밀로 유지해야겠다는 윤리적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편집장은 불만신청인의 자세와 행동을 폭로하는 것이 대중들의 관심사를 따르는 일이고 통신문은 불만신청인의 “심각한 잘못”에 대한 증거였다고 주장했다. 편집장이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던 단 한 가지 사항은 사진을 제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돈에 대한 문제였다고 말하고 그 이후의 e-메일들은 편집장이 정보와 e-메일을 비밀로 남기기로 약속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

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편 편집장은 재판 중에 나타난 내용들, 특히 불만신청인이 정부(情婦)와 수년 동안 바람을 피우고 “여자 두 명을 가지고 놀았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불만신청인이 보내왔던 e-메일들에서 다른 사실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편집장은 불만신청인이 여전히 아내와 정부(情婦) 모두에게 연락을 하면서도 사건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는 기색이 e-메일에 확연히 나타났고 아내와 전 애인의 처지에 대한 농담까지 하면서 자신은 결백한 사람인 듯이 포장된 정보를 신문사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편집장은 보도된 기사는 e-메일의 정확한 내용들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편집장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불만신청인이 부탁하지도 않은 e-메일 계속 보냈다고 말했다. 캠브리지 이브닝 뉴스사는 이 기간 동안 만큼은 불만신청인과 전 애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불만신청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대처했다. 편집장은 윤리강령 제5조는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불만신청인이 언급한 기사는 재판도 이미 끝나고 사건이 발생한지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불만신청인은 캠브리지 이브닝 뉴스사가 몇몇의 사실적인 내용을 인용할 수는 있지만 자료의 출처를 밝힘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불만신청인은 편집장이

전화통화에서 “이 대화는 발설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고 불만신청인은 이를 단지 형식적인 것이 아닌 엄밀한 약속으로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불만신청인은 자신이 보낸 e-메일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비밀로 해주십시오’라는 문장을 썼고 이에 대해 편집장의 답장은 ‘걱정 마십시오’라고 시작됐다고 말했다. 불만신청인은 캠브리지 이브닝 뉴스사가 보도한 자신과 아내, 전 애인 사이에 있던 일을 반박했다.

이러한 양 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PCC는 먼저 윤리강령 제4조에 대한 불만신청부터 살펴보았다. 첫 대화 이후의 통신문들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에 대해 불만신청인과 편집장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다. 불만신청인은 그들의 의논 내용이 e-메일 내용에도 적혀있듯이 계속해서 비밀로 남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PCC는 이 두 명의 대화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판단할 수 없고 단지 현재 주어진 증거물들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PCC는 불만신청인이 자신의 e-메일을 통해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려 한 것은 분명하다고 봤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캠브리지 이브닝 뉴스사가 그것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모든 연락내용에 없다는 것이다. 분명 불만신청인은 비밀엄수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지만, 이것에 대해 캠브리지 이브닝 뉴스사는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았

고 이 부분은 윤리강령 제14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PCC는 판단했다. PCC는 불만신청인이 기사의 중심에 있었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기사를 조작하려는 꾀새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PCC는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캠브리지 이브닝 뉴스사가 불만신청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고 윤리강령 제14조에 대한 불만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디지털 통신을 비롯한 통신문’을 포함한 불만신청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주지 못한 캠브리지 이브닝 뉴스사가 윤리강령 제3조를 위반했다는 불만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PCC는 윤리강령 제3조는 두 사람의 사적인 대화내용을 허락 없이 보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지 언론사에 직접 보낸 통신내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PCC는 불만신청인과 편집장의 관계는 사적 관계로 볼 수 없고 설령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부분의 자료가 더 많은 사람을 겨냥한 것이었으며 이 정보들이 불만신청인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이 아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던 재판의 배경에 대한 것이었고 대중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이었다고 PCC는 판단했다. 이에 PCC는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캠브리지 이브닝 뉴스사가 윤리강령 제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PCC는 윤리강령 제1조에 대한 불만을 살펴보았다. 이 부분에 대한 불만신청인의 불만 대부분은 기사가 그의 코멘트를 인용할 때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PCC는 언론사는 사건에 대해 확실한 의견을 낼 권리가 있고 e-메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PCC는 편집장이 주장한대로 e-메일의 내용이 불만신청인의 아내에 대한 “배신”이라고 본 것은 기사의 관점일 뿐이라고 보았다. PCC는 캠브리지 이브닝 뉴스사의 기사 내용이 전체적

으로 봤을 때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정정 보도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윤리강령 제1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마지막으로 PCC는 윤리강령 제5조에 대한 불만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제5조는 보통 사망 사건이나 충격적인 사건의 발생 직후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번 경우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재판이 끝났고 사건이 발생했는지도 몇 개월이 흐른 상황에서 보도된 것이므로 캠브리지 이브닝 뉴스사가 제5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사정정을 위한 의회의 요청사항입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라는 내용의 e-메일과 함께 “의회의 10년 지역 계획 - 해명 문서”라는 제목의 반장짜리 진술서를 첨부했다.

답장 e-메일에서 마운틴 썬 지의 편집장은 신문사 관계자들과 논의한 결과 사실의 내용을 바꿀 수 없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편집장은 자신과 사실 작성자의 e-메일을 첨부시키고 이에 나타난 이유에 따라 불만신청단체의 답변을 신문에 게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첨부물에서 사실 작성자는 자신이 공개한 수치 정보가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실 작성자는 자신이 작성한 것은 뉴스가 아닌 사실이고 신문사의 접근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조작’을 하려는 불만신청단체가 뻔뻔하다고 e-메일을 통해 밝혔다. 또한 사실 작성자는 “결국 불만신청단체도 자신들의 선전을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전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반문하고 의회의 요청이 일반적인 ‘정정보도’ 정책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 작성자의 주장에 대해 편집장 역시 불만신청단체에 보낸 e-메일에서 “사실 작성자의 주장에 동의하며 일간지의 사실에 대해 ‘정정보도’를 행사하는 것은 장관이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불만신청단체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편집장과 사실 작성자의 e-메일을 본 후 신문사와 직접 논

뉴질랜드 사례

사실란에는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사실에 대한 정보는 정확해야 한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퀸스타운 레이크 지방회의(이하 불만신청단체)가 『지금 말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다』라는 제목의 2006년 5월 11일자 마운틴 썬 지 기사에 대해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였다. 불만신청단체는 이 기사가 정확성(윤리강령 제1원칙)과 제2원칙(신속한 정정보도)을 위반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문제의 기사(사실)는 마운틴 썬 지의 ‘SCENESPEAK’란에 프랭크 마빈의 이름으로 게재되었다. 이 사실은 불만신청단체의 지역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랭크 마빈은 이 신문사의 전 발행자였다. 문제의 사실은 지방세, 부채와 소모 자본의 총액에 대한 것과 지방세 납부자들이 불만신청단체의 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사실 끝에는 독자들이 불만신청단체에 의견을 알릴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문제의 사실에는 “올해의 지방세와 10년 후의 지방세를 비교하면 무려 204%가 차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사실이 공개됐을 때, 불만신청단체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마운틴 썬 지의 편집장에게 전화로 불만을 얘기한 후, “이것은 기

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것은 '정보 조작'이 아닌 정확한 사실을 사회에 알리는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뉴질랜드 신문평의회에 불만을 신청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이번 불만신청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고 판단했다. 하나는 사실의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불만신청단체와 마운틴 썬 지의 대화 과정이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첫 번째 부분에 대해 SCENESPEAK 사실이 마운틴 썬 지의 독자들도 익히 알고 있는 과격한 스타일로 전달되었다고 보았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이 사실이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 분위기를 반영해 작성된, 전형적인 의회 예산안과 세금 인상에 관한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이 시점에서 만약 편집장이 불만신청단체가 총괄적인 정정 보도를 원한 것인지 아니면 약간의 문장 수정을 원한 것인지를 확실히 파악했거나 불만신청단체가 잘못된 숫자에 대한 수정을 원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면 손쉽게 정정보도가 났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에 불만이 접수되고 난 후 마운틴 썬 지는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2006년 6월 29일자 마운틴 썬 지 SCENESPEAK란 끝에 작은 정정보도가 게재됐다. 이는 문제 기사가 보도된 지 7주 만이고 신문평의회가 조사를 착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불만신청단체의 불만 신청을 인정하면서 "사설란에는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지만 사실에 대한 정보는 정확해야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정정보도에 대한 신문사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보았다.

불만신청단체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제

기하며 불만신청단체로 보낸 신문사의 경멸적인 e-메일에 대해 불만을 신청했지만 각하됐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사실의 문제와 불만신청의 중점을 비교한 후 세금인상률의 계산에 대한 착오(제1원칙)와 정정보도를 신속히 하지 않은 것(제2원칙)에 대한 불만을 인정했다. □

호주사례

독자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제기된 불만신청은 인정할 수 없다

호주 신문평의회는 마렉 스위다가 폴란드 태생 유대인 데이비드 펠의 부고 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불만신청을 기각했다.

불만신청인은 지난 2006년 5월 26일자 더 에이지, 멜버른 지에 보도된 부고 기사의 내용 중 제2차 세계대전 전의 폴란드에 대한 표현이 부정확하고 반(反)폴란드적인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편집장에게 기사의 철회와 그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해명을 원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불만신청인이 지적한 사항은 전쟁 전에 폴란드에서 유대인 대학살이 있었다는 것과 폴란드 군대 내에서 반(反)유대인 사상을 제도화하고 있었다는 것 등이다. 또한 부고 기사에는 숨진

데이비드 펠이 폴란드 군대에 자원입대했고 그가 폴란드의 숲에서 독일군을 상대로 게릴라 활동을 했으며 그동안 폴란드 가족에게 그의 어린 딸을 맡겼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문사 측은 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불만신청인의 편지에 답하는 것 역시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문사는 이 부고가 "한 사람의 인생과 경험에 관한 견해를 담은 것이다. 이 견해가 불만신청인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신문평의회 규칙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호주 신문평의회 역시 신문사 측의 견해에 동의하고 불만신청인의 불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